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6차 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제조합 사업에 투자 등 수익사업 신설〉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04호)

2025. 11.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임 중 수

목 차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2213304)	1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공제조합 사업에 투자 등 수익사업 신설(안 제51조의6제7호 신설)	2

□ 정준호의원 대표발의(221330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준호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9. 26.
3. 회 부 일 : 2025. 9.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련 공제조합이 운영되고 있음.

최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은 사업 범위 제한에 따른 수익성 저하와 지속가능성 약화, 재정기반 약화 등에 직면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조합원과 시민의 복리 증진, 사업여건 개선, 수익성 확보 등을 위해 새로운 사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법률상 열거된 사업 외에는 사업을 확대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허용함으로써, 공제조합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교통사고 피해자 등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6 제1항제7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공제조합 사업에 투자 등 수익사업 신설(안 제51조의6제7호 신설)

개정안은 공제조합의 사업에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투자 등의 수익사업’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 ⑤ (생략)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① ----- -----. 1. ~ 6. (현행과 같음) <u>7.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투자 등의 수익사업</u> 8. -----제7호까지의----- ----- -----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 검토의견

현행법은 운수사업자가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¹⁾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의 가입률은 91.1%로 대부분의 운수사업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하고 있음.

【 자동차 공제조합 일반현황('24.12월 말) 】

구 분	연합회 부대사업					독립법인
	택 시	화 물	버 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설립일	'79.6.20	'81.7.1	'81.12.24	'93.2.1	'97.12.24	'12.10.26
직원(명)	389	698	439	455	166	312
총자산(억원)	2,970	6,720	4,441	4,020	848	3,994
가입대수	63,067	187,617	39,782	153,387	39,765	555,811
(가입대상)	(83,469)	(205,844)	(43,277)	(164,354)	(40,020)	(1,247,994)
가입률(%)	75.6	91.1	91.9	93.3	99.4	44.5
경영관리	지부별 독립채산제				전국채산제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운수사업자는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조합원이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합원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운수사업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⑤ 공제조합의 조합원은 공제사업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⑥ 조합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⑦ 정관의 기재 사항, 그 밖에 공제조합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공시자료²⁾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공제가입 조합원 수는 13,460개, 가입대수는 186,515대로 나타났으며, 계약체결건수는 2025년 상반기 108,462건으로 나타났음.

【 공제가입 현황 】

구분	2025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	증감
조합원수(업체)	13,460	13,785	-325
가입대수(대)	186,515	189,108	-2,593

- 조합원 수 : 공시기준일 기준 공제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수
- 가입대수 : 해당년도 6월말 계약 대수

수입분담금은 317,053백만원, 지급공제금은 250,900백만원으로 수입분담금은 전년대비 6,465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무상태와 관련하여서는 당기순이익이 2025년 상반기에 전년도(9,570백만원) 대비 8,407백만원(88%) 증가한 17,977백만원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재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공제계약 현황 】

구분	2025년 상반기	2024년 상반기	증감
계약체결건수(건)	108,462	110,272	-1,810
계약대수(대)	186,515	189,108	-2,593
평균유효대수(대)	93,288	94,549	-1,261
수입분담금(백만원)	317,053	310,588	6,465
지급공제금(백만원)	250,900	252,785	-1,885

- 계약체결건수 : 해당 연도 초부터 공시기준일까지 체결된 공제계약의 총 건수(신규 및 갱신 계약 건수)
- 계약대수 : 공시기준일 기준으로 유효한 계약 건수(해지, 실효, 만기 등으로 공제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봄)
- 평균유효대수 : 해당연도 초부터 공시기준일까지 공제에 가입된 책임공제담보의 일별 계약대수를 합산한 후, 해당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출(소수점 이하 버림)

2) KTA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2025년도 상반기 경영공시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제조합의 사업으로는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조합원이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등이 있으며,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³⁾

개정안은 ‘공제조합 목적 달성에 필요한 투자 등의 수익사업’을 공제조합의 사업으로 추가하려는 것으로,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자금을 기반으로 조합원 복지사업 등 기존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보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6(공제조합사업) ①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배상 책임 및 적재물배상에 대한 공제
 2. 조합원이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그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한 공제
 3. 운수종사자가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입은 자기 신체의 손해에 대한 공제
 4. 공제조합에 고용된 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제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그 밖에 조합원의 편의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제2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과 분담금,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지급준비금의 계상 및 적립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공제조합은 결산기(決算期)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3항의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보험업법」 제193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에 따라 공제조합의 사업범위에 수익사업을 허용하도록 할 경우 지속가능한 수익성 확보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조합 운영의 자율성 강화, 조합원 서비스 다양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은 후생·복지 증진 목적의 공제조합과 달리 운수종사자들의 차량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합원들이 분담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사업 및 적재물배상 공제사업의 시행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공제조합이 조합원 보호를 위한 재원으로 운용해야 할 자금을 고위험 투자에 노출시킬 경우 투자손실로 인한 조합 재정 악화와 공제금 지급여력 약화 등으로 본래 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 운용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택시, 화물 등 현재 자동차공제조합의 2024년 기준 운용자산 1조 9,097억원 중 86%를 현·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공제조합 운용자산 현황('24.12월 말) 】

(단위 : 억원, %)

구 분		택시	화물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계
'24년	현예금	2,444	5,981	3,575	3,513	765	147	16,425
	대출금	71	4	-	100	-	562	737
	주식	-	31	-	-	-	-	31
	채권	-	1	-	-	-	730	731
	부동산	254	267	149	182	2	318	1,173
	계	2,769	6,284	3,724	3,795	768	1,757	19,097
운용 자산 구성비	현예금	88.3	95.2	96.0	92.6	99.7	8.4	86.0
	대출금	2.6	0.1	0.0	2.6	0.0	32.0	3.9
	주식	-	0.5	-	-	-	-	0.2
	채권	-	0.0	-	-	-	41.5	3.8
	부동산	9.2	4.3	4.0	4.8	0.3	18.1	6.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유사하게 조합원의 사업용 자동차 사고로 생긴 배상책임에 대한 공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⁴⁾, 자동차매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융자, 손해배상 등에 대한 공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은 수익사업을 사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에 ‘수익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의 목적과 성격, 공제조합의 재정 건전성, 조합원의 권익 보호라는 공제조합의 본래 설립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사업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4)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213124, 정준호의원 등 13인)이 발의되었음.

수익사업을 허용할 경우에도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조합원의 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관에 규정하고,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 장치를 병행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공제회·공제조합 사업범위에 ‘수익사업’ 포함 여부 】

근거 법률	대상자	사업의 범위에 ‘수익사업’ 포함 여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X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X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매매업자	X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사업자	○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
건축사법	건축사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방산업체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엔지니어링사업자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교직원	○
경찰공제회법	경찰공무원	○
산업발전법	자본재공제조합, 조선공제조합	X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배달서비스)	X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방사업자	X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사업자	X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판매업자	X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조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X

나. 국토교통부 의견

자동차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보증이나 회원 복지·후생사업 위주의 타 공제조합과 달리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위해 「보험업법」상 자동차손해보험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만큼 무분별한 수익사업 방지를 위한 한계 설정이 반드시 선행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80